

# 구미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       |             |
|-------|-------------|
| 발의연월일 | 2017. 11. . |
| 발 의 자 | 박교상의원 외 4명  |

# 구미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박교상의원 대표 발의)

|     |  |
|-----|--|
| 의 안 |  |
| 변 호 |  |

발의연월일 : 2017. 11.

발 의 자 : 박교상, 김인배, 김정곤, 양진오, 정근수 의원  
(5인)

## 1. 제안이유

구미시의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의 편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안 제4조)
- 나. 전기자동차 구매자, 충전시설 설치자에 대한 경비지원(안 제5조)
- 다. 전기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우선주차구역 설치, 충전시설 설치 등  
(안 제6조)
- 라.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안 제7조)

## 3. 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 구미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구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②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 2.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2. 충전기 관련 KS 규격이나 단체표준 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아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전기자동차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전기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②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③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내에 공공용 충전시설 설치

④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홍보활동) 시장은 자동차관련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등에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5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2.5.23.>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배출가스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12.2.1.>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2.2.1., 2012.5.23., 2016.1.27.>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 그 밖에 태양광, 수소연료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6.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당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2012.2.1., 2013.4.5.>

⑤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8.3.21., 2012.2.1., 2013.4.5., 2016.1.27.>

1. 부착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
2.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
3. 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제3항제1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천연가스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터리, 그 밖의 장치·부품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⑦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2016.12.27.>

⑧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이 재사용·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2016.12.27.>

⑨ 제6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과 제8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지원 및 저공해자동차의 개발·연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⑩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자가 제4항에 따른 의무 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12.2.1., 2013.4.5., 2016.12.27.>

⑪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2013.4.5., 2016.12.27.>

⑫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2013.4.5., 2016.12.27.>

⑬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제5호에 따른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2013.4.5., 2016.12.27.>

⑭ 제13항에 따라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을 높이 달성하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는 자의 자동차 폐차가 우선하여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5.23., 2013.4.5., 2016.12.27.>

⑮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충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2016.12.27.>

⑯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6.12.27.>

⑰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6.12.27.>

[시행일 : 2017.12.28.] 제58조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23., 2016.12.2.>

①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④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⑤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⑥ "연료전지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⑦ 삭제 <2016.12.2.>

⑧ 삭제 <2016.12.2.>

⑨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5.24.]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4.]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구미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재정수반요인

- 전기자동차 구매자, 충전시설 설치자에 대한 경비지원에 따른 세입·세출발생(안 제5조)

###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8년도 본예산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편성될 비용을 기초로 세입은 재원별, 세출은 통계목별로 산정한다.
- 추계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으로 한다.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 연도<br>구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세입          | ○ 국고보조금               | 492,000  | 492,000  | 492,000  | 492,000  | 492,000  | 2,460,000 |
|             | ○ 도비보조금               | 114,000  | 114,000  | 114,000  | 114,000  | 114,000  | 570,000   |
|             | 소계(a)                 | 606,000  | 606,000  | 606,000  | 606,000  | 606,000  | 3,030,000 |
| 세출          |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 720,000  | 720,000  | 720,000  | 720,000  | 720,000  | 3,600,000 |
|             | 소계(b)                 | 720,000  | 720,000  | 720,000  | 720,000  | 720,000  | 3,600,000 |
| □ 총 비용(a-b) |                       | -114,000 | -114,000 | -114,000 | -114,000 | -114,000 | -570,000  |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 연도<br>구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국 비      |  | 492,000 | 492,000 | 492,000 | 492,000 | 492,000 | 2,460,000 |
| 도 비      |  | 114,000 | 114,000 | 114,000 | 114,000 | 114,000 | 570,000   |
| 시 비      |  | 114,000 | 114,000 | 114,000 | 114,000 | 114,000 | 570,000   |
| 민 간      |  |         |         |         |         |         |           |
| 기 타      |  |         |         |         |         |         |           |
| 합 계      |  | 720,000 | 720,000 | 720,000 | 720,000 | 720,000 | 3,600,000 |

5. 부대의견 : 세입(국도비보조금) 및 세출(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은 추정비로서 여건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 6. 작성자

|        |              |
|--------|--------------|
| 작성자 이름 | 환경안전과 김정연    |
| 연락처    | 054-480-5274 |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 세입

- 국도비보조금 추정

(단위: 천원)

| 구 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국비보조금 | 492,000 | 492,000 | 492,000 | 492,000 | 492,000 |
| 도비보조금 | 114,000 | 114,000 | 114,000 | 114,000 | 114,000 |
| 소 계   | 606,000 | 606,000 | 606,000 | 606,000 | 606,000 |

※ 2018년도 세입예산에 편성될 금액을 기초로 재원별 산정(2018년도 가내시 참고)

### 2. 세출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예산액 산정

(단위: 천원)

| 구 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계         |
|--------|---------|---------|---------|---------|---------|-----------|
| 민간자본이전 | 540,000 | 540,000 | 540,000 | 540,000 | 540,000 | 2,700,000 |
| 자산취득비  | 180,000 | 180,000 | 180,000 | 180,000 | 180,000 | 900,000   |
| 계      | 720,000 | 720,000 | 720,000 | 720,000 | 720,000 | 3,600,000 |

※ 2018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될 비용을 기초로 통계목별 산정(2018년도 가내시 참고)